

# 예산총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14,081,758	9,422,453
일반회계	311,948,333	9,358,450
특별회계	2,133,425	64,003
기타특별회계	2,133,425	64,003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62,820	4,885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53,600	1,608
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	7,134	214
주차장특별회계	1,909,871	57,29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145,15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